

의안 번호	2531	[2026 ~ 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2. 5.(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2. 5.(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6.(화)

2.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수급 적정성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획기간: 2026년 ~ 2030년(5년)
 - 기본방향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 기준인건비 준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년) 연동
 -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고려
 -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연차별(2026~2030년) 탄력적 인력 운영
- 기구조정 및 계획정원
 - 기구 조정 : 증 담당2
 - 공무원 정원 : 증 7명
(2026년 증3, 2027년 증1, 2028년 증1, 2029년 증1, 2030년 증1)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운용계획(안): 붙임**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안)을 중구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I 근거 및 계획기간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계획기간 : 2026년 ~ 2030년 (5년간)

II 중기인력운용 전망

□ 지역여건 전망

○ 인구 추세: (2013년~2015년)인구증가→(2016년~현재)인구감소→(2026년~)인구증가

- 과거: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최고 2015년 244,481명), 그 이후 취업과 학업, 주택 등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 지속
- 현재: b-05구역 준공 및 입주로 인구 증가세로 잠시 전환됐으나, B-0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보상 및 이주 단계로 접어들어 따라 또다시 감소로 전환
- 전망: B-04구역 및 우정동 등 주택재개발 사업 준공, 다운2지구 공공주택 지구 입주 등 신축 아파트 준공 요인으로 미래인구 증가 전망

○ 경제구조 변화: 구도심→혁신도시 조성, 주택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산업단지 조성

- 과거: 대부분 주거와 상업지역의 전통서비스산업 중심의 구도심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취약
-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주택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 상권 인프라 구축
-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현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자급자족형 복합도시로 거듭날 전망

○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37%, 의존재원 81.5%, 사회복지분야 예산 53.14%

- **과거:** 구도심 상권의 쇠약 등에 따라 자체재원이 열악하고, 코로나,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자체세입 감소 추세
 - **현재:** 2025년 2회 추경기준 재정자립도 12.37%,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81.5%,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53.14%(6,282억원 중 3,217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중이 높음
 - **전망:** 2026년 자체수입은 금년대비 34억원 소폭 증가한 656억원으로 전망되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국·시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수요 변화: 대규모 단지 개발, 돌봄통합, 재난대응 관련된 행정수요 증가**
- **과거:** 전통시장 활성화, 체육시설 조성, 공공실버주택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완료
 - **현재:** (신)태화배수장 운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재개발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돌봄 통합지원 등 신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전망:**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주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설 개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의 행정수요가 필요할 전망

□ 인력운용 기본방침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 2027년까지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 운영하되, 법적인력 및 중점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증원
 -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활용
- **기준인건비 준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년) 연동**
 -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계획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기능과 인력배분을 조정
 - 기준인건비 및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인 기능 및 인력 조정 운영
- **민선8기 공약 완료 및 민선9기 행정수요 고려**
 - 민선8기 중점 현안사업의 완료 및 민선9기 행정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마련
-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연차별(2026~2030년) 탄력적 인력 운영**

5. 별정직 직급별 계획

(단위: 명)

구분	2024. 12.31.	2025. 9. 30.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2	2	-	2	-	2	-	2	-	2	-	2	-	
상 당 계 급	5급	1	1	-	1	-	1	-	1	-	1	-	1	-
	6급	-	-	-	-	-	-	-	-	-	-	-	-	-
	7급	1	1	-	1	-	1	-	1	-	1	-	1	-
	8급	-	-	-	-	-	-	-	-	-	-	-	-	-
	9급	-	-	-	-	-	-	-	-	-	-	-	-	-

6.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2026년 : 증 1담당, 증 5명 / 감 2명

① 복지지원과: 증 1담당, 증 3명

- 생활보장계 소속 이동으로 인한 증원 (행정·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 7급 2, 사회복지 8급 1)
-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 등 인력재배치를 위한 인력 감원 (사회복지9급 1)

② 노인장애인과: 감 1명

-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한 담당 신설 및 인력 증원 (행정·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 7급 1, 사회복지9급 1)
- 생활보장계 소속 이동으로 인한 감원 (행정·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 7급 2, 사회복지 8급 1)

③ 건설과: 증 1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업7급 1)

④ 의회사무국: 증 1명

- 비서 업무 일반행정 인력 배치 (행정9급 1)

⑤ 중앙동: 감 1명

-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감소로 인력 감원 (사회복지 7급 1)

2027년 : 증 2명 / 감 1명

① 가족복지과: 감 1명

- 유보통합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력 감원 (사회복지8급 1)

② 공원녹지과: 증 1명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및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관련 인력 증원 (행정·녹지7급 1)

③ 안전총괄과: 증 1명

- (신)태화배수장 신설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 증원 (시설·공업8급 1)

2028년 : 증 1명

① **건설과: 증 1명**

- 도로확장 공사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시설8급 1)

2029년 : 증 1담당, 증 2명 / 감 1명

① **기획예산실: 증 1담당, 증 1명**

- 자체감사 및 청렴시책 업무 증가에 따른 조사계 신설 (행정6급 1)

② **가족복지과: 감 1명**

-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저출산 현상으로 관련 인력 감원 (사회복지8급 1)

③ **도시과: 증 1명**

-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개발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시설8급 1)

2030년 : 증 1명

① **교통과: 증 1명**

- 주차장 조성 확대에 따른 시설 정비 및 관리 인력 증원 (행정8급 1)

7. 자체수입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12.3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일반·특별순계세입규모(A)	534,461	520,545	-13,916	586,191	65,646	592,270	6,079	596,316	4,046	598,571	2,255	601,482	2,911	
자체수입	계(B)	80,282	80,491	209	83,937	3,446	71,639	△12,298	72,378	739	73,338	960	74,061	723
	지방세(C)	52,261	53,325	1,064	56,500	3,265	44,192	△12,308	44,800	608	45,530	679	46,229	690
	세외수입(D)	28,021	27,166	△855	27,347	181	27,447	100	27,518	71	27,799	281	27,882	33
	지방채(E)													
기준인건비 편성액(F)	65,161	70,776	5,164	74,315	3,539	76,544	2,229	78,840	2,296	81,205	2,365	83,641	2,436	
기준인건비 기준액	64,529	66,256	1,727											
비율	F/A	12.3	13.6		12.7		12.9		13.2		13.5		13.9	
	F/B	81.7	87.9		88.5		106.8		108.9		110.7		112.9	
	F/C	125.5	132.7		131.3		173.2		175.7		178.3		180.9	

※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당초예산을 작성, 2026~2030년은 추정금액을 작성하되 중기재정계획 자료 반영,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2024년 ~ 2025년만 작성

8.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인건비	이전경비	계	인건비	이전경비	계	인건비	이전경비
2024년 (최종예산)	65,161,079	51,939,675	13,221,404	64,880,700	51,688,402	13,192,298	280,379	251,273	29,106
2025년 (당초예산)	70,776,728	55,503,655	15,273,073	70,446,839	55,202,890	15,243,949	329,889	300,765	29,124

IV 향후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계획

- 사업(시설물)명: 중부권 노인복지관(신설)
 - 위탁기간/규모: 2030. 1.~ 2034. 12.(5년) / 3,000㎡
 - 위탁비용: 연간 1,101백만원
 - 예상운영인력: 15명
 - 위탁사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